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0. 11.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5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5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
안성환·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사무위임에 관하여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별표1)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별표2) 중 부서명 등을 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안 별표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 해당 없음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총무과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직 위 부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별표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원 여권과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	1.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30조
		3.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 정보과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2.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세정 과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납세증명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노인 복지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설묘지매장· 화장· 개장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공설묘지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 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삭제 <2009. 3. 2>	
		4. 공설묘지과태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구 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구 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규	수임기관
자치 행정과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부여 및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총무과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 대한 직 위 부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의회사무국장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실과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원 지적과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	1.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30조
		3.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2.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세정과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납세증명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 복지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설묘지매장· 화장·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공설묘지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 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삭제 <2009. 3. 2>	
		4. 공설묘지과태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민원 여권과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제외한 기타 권한	1.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및 제30조
		3.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 정보과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2.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세정과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지방세납세증명발급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발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노인 복지과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설묘지매장· 화장·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공설묘지매장· 화장 및 납골당의 매· 화장 및 납골증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삭제 <2009. 3. 2>	
		4. 공설묘지과태료 징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형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이형덕·조미수·한주원·
안성환·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관하여 특정성별의 비율을 정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추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위촉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 해당 없음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중 “70%”를 “6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u>70%</u>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 ----- ----- <u>60%</u>-----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한주원·이형덕·조미수·
안성환·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지원 분담금을 교부하고 서비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내실화를 추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국제화지원 분담금 교부 및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총무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p>	<p>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한다.</u></p>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p> <p>①(생 략)</p> <p>②(생 략)</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지급 한도액 등 <u>기타</u>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u><신 설></u></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u>----- -----.</p> <p>제4조(<u>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u>) ① <u>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u> <u>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u> <u>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u> <u>징수한다.</u></p> <p>② <u>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u> <u>음 각 호와 같다.</u></p> <p>1. <u>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u> <u>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u></p> <p>2. <u>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u> <u>하는 행위</u></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공무원 여비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조미수·이형덕·한주원·
안성환·이주희·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 중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내용(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계과
입안자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박성민·이주희·
이형덕·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저개발국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통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공정무역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광명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공정무역은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목표 중 8개의 접점을 가지고 있기에 광명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민운동임

2. 주요내용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안 제6조~제8조)
-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4조)
- 공정무역 제품의 판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① 시장은 광명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
한 사업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정무역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량이 높은 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의 심사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자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심사수당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시청, 시의회, 공사, 재단 등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사용 등) ①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관계 법령 발췌서

□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 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이형덕·박성민·
이주희·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용어정의(안 제2조)
- 상권육성구역 지정, 지정신청,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원사업, 사업평가(안 제16조~21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권육성구역 지정·변경·취소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조미수 (2680-25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2.·3.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생략)</p> <p><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u></p> <p>3. <u>“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 “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p> <p>4.·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제12조(위원회의 기능)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상권육성구역 지정·변경·취소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6조(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u>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신 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 설>

제18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 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 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

<신 설>

<신 설>

실한 경우

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20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주희·안성환·
이형덕·조미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광명시 주민의 주민 자치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규정의 형식상 오류 수정(안 제16조, 제24조)
-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회의 등(안 제27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의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마을만들기 사업)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3. ~ 5. (생략)</p> <p>제27조(회의 등) ①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생략)</p>	<p>제16조(마을만들기 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위원회 기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27조(회의 등)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p> <p>1. <u>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p> <p>2. <u>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u></p> <p>② ----- -----.</p> <p><u>과반수의 찬성</u>-----.</p> <p>③ (현행과 같음)</p>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현충열·이주희·안성환·
이형덕·조미수·한주원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협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조의2(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 주·자립·자치의 기본 이념과 국제 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여야 한다.</u></p> <p><u>②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민 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간의 신뢰와 협동을 기반으로 운영하여야 한다.</u></p>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주희·이형덕·
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시민농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658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위원의 해촉) <u>위원장</u>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u>위원</u>을 해촉할 수 있으며, <u>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u></p> <p>1. ~ 3. (생 략)</p>	<p>제11조(위원의 해촉) <u>시장</u>----- ----- ----- ----- <u>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김윤호·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조미수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시행(안 제3조)
-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등(안 제4조)
-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5조~제8조)
- 직거래장터의 위탁관리(안 제9조)
-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 등(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광명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 인증”이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개설 및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개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등은 법 제14조를 적용한다.

③ 시장은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경우 시보, 시정소식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개설 장소 및 기간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3. 관계 공무원
4. 지역 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관리·운영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표지판을 교부하며, 이 경우 인증 절차 및 기준, 인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성민 (2680-2536)

관계 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임시시장의 면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구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김윤호·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조미수 의원

1. 제안이유

-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광명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시행(안 제3조)
-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안 제4조)
-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 등(안 제5조, 제6조)
-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제13조)

3. 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 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
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농업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재해 업무 소관 부서장
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
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재해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성민 (2680-2536)

관계법령발췌서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업재해로 인한 수산양식물의 피해가 있는 경우

가. 수산종자대금

나.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2.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4. 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가 또는 어가가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준하는 보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어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어업권을 반납하여 폐업하는 경우 제2항이나 제3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 및 어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의 구입비,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토지·가옥·시설·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대책 명령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어업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1.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정(管井) 등 지하수 이용시설
2. 해일·태풍·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풍망, 방풍림, 방풍벽 및 농작물용 지주시설(支柱施設)
3. 이상저온·서리·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리방지팬, 미세살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4. 우박 피해 예방을 위한 그물망
5.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재
6.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및 야생동물 퇴치기
7.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적조 검출장치, 액화산소 공급장치, 해수 여과장치 및 비상발전기
8.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파리 배출망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조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안성환·이주희·이형덕·

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 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실·유기동물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8조(위원의 해촉) <u>위원장</u>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u></p> <p>제8조(위원의 해촉) <u>시장</u>----- ----- -----.</p> <p>1. ~ 4. (현행과 같음)</p>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안성환·이형덕·
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명시 디지털로 34”를 “광명시민회관 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0일

발 의 자 : 이주희·안성환·이형덕·

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안 제5조의2)
- 기금 결산보고서의 제출 시기에 대한 사항(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0. 11. ~ 2019. 10. 15.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육업무담당 국장, 기획예산과장

제8조제2항 중 “6월 말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 7일 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현충열 (2680-253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업무담당국장이 된다</u>.</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p>1. <u>광명시 체육회장 · 생활체육협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u></p> <p>2. ~ 5.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제8조(기금결산)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u>6월 말일까지</u>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의2(구성) ① ----- ----- ----- <u>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 ---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 ----- <u>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u>.</p> <p>1. <u>체육업무담당 국장, 기획예산과 장</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1차 정례회 집회 7일 전</u>----- -----.</p>

관계 법령 발췌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